

## 「구미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」

# 심 사 보 고 서

### 1. 심사경과

가. 발의일자: 2025년 9월 2일

나. 발 의 자: 이상호 의원

다. 찬 성 자: 김근한 · 김민성 · 김영길 · 김영태 · 김원섭 ·  
김정도 · 김재우 · 소진혁 · 이명희 · 이지연 ·  
장미경 · 추은희 · 허민근 의원(13인)

라. 회부일자: 2025년 9월 2일

마. 상정일자: 2025년 9월 11일

제290회 구미시의회 임시회

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상정, 질의, 토론, 의결

### 2. 제안 설명의 요지

가. 제안 설명자: 이 상 호 의원

#### 나. 제안이유

- 구미시에 거주하는 한부모가족이 직면한 경제적, 사회적 어려움을 해소하며, 건강하고 안정적인 가족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한부모가족의 자립 기반 강화 및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.

## 다. 주요내용

-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(안 제3조)
-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(안 제5조)
- 지원 대상 등에 관한 사항(안 제6조)
-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(안 제7조)

## 라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
  -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
- 기 타: 조례안 예고(2025. 9. 2. ~ 9. 7.) 결과 의견없음

## 3. 검토보고의 요지 - 전문위원 박영훈

### ○ 본 조례안은

- 구미시에 거주하는 한부모가족이 직면한 경제적, 사회적 어려움을 줄이고, 건강하고 안정적인 가족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한부모가족의 자립 기반 강화 및 복지 증진을 위한 것으로,

### ○ 검토 결과,

- 매년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, 자립기반 조성 등 복지 증진을 위하여 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여 정책의 지속성과 체계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.

- 다만, 제6조에 지원 대상을 “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” 까지 포함하여 사각지대에 있는 시민들에게 수혜를 줄 수 있지만, 범위를 포괄적으로 설정하여 지원 대상이 지나치게 넓어질 경우 예산상의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지원 대상 설정 시 세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.
- 또한, 제6조 제3항의 “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받고 있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” 는 규정은 중복지원 방지와 재정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장치로서 타당하나, 실제 현장의 한부모가족 생활 여건을 충분히 반영하여 지원이 필요한 가구가 적절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과 예외 규정을 함께 마련할 필요가 있음.

4. 질의 및 답변요지: 생략

5. 토론요지: 생략

6. 소수의견의 요지: 생략

7. 심사결과: 원안가결